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42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 현 · 이주희 · 민형배
진성준 · 박지원 · 박용갑
조인철 · 최민희 · 이정현
황정아 · 전진숙 · 민홍철
이광희 · 최혁진 · 이훈기
노종면 · 박선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 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용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용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 “수행과정이

부적절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 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 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u>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 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 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 -----

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 5. (생략)

③ (생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생략)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
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

-----.

1. ----- 창의성, 연
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3.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유지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용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

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용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
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_____
 _____ 수행과정
 이 부적절한 _____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⑥ (생략)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
우

2. ~ 6. (생략)

② ~ ⑥ (생략)